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자료제출 의무 부여대상 투자조합 및 자료 제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 등 규정(안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나. 투자조합의 자료제출 의무 구체화(안 제84조)

자료 제출 의무 부여대상으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을 규정하고 해당 투자조합에 대하여 증권 등의 보유·거래내역, 조합원의 출자지분 현황·출자

지분 변동내역 자료를 해당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도록함.

대통령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21. ~ 4.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이 항”을 “이 항 및 제34조의5”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제1호 중 “이 항”을 “이 항 및 제34조의5”로 한다.

제34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서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서 이로 인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특정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면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가 특수관계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주등인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을 말한다.

1. 특수관계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 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것

2. 특수관계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자본거래로서 일부 주주등이 신주(전환사채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를 배정·인수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

3. 현물출자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

4.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거나 낮은 것

5. 특수관계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는 것

6.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한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 등은 제외한다)

7.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통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된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자본거래 제34조의5제4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중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대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제4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1조의2·제42조의2와 제28조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할 때에는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하며, 제4호를 준용할 때에는 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본다.

제8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82조제8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조합을 말한다.

1.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2.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합과 유사한 투자조합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투자조합이 법 제82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명세서를 증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의 증권등의 보유내역
2.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의 증권등의 거래내역

3.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내역

4.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변동내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u>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u>)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 1. ----- ----- ----- <u>인</u> <u>조 및 제34조의5에서</u> ----- ----- ----- 2. ----- ----- ----- ----- ----- ----- ----- ----- ----- ----- ----- -----

초과하지 못한다. 가. (생략)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u>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u>) 다. (생략) 3. 4. (생략) ② ~ ⑤ (생략)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u>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u>)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생략) ③ ~ ⑥ (생략)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이 항</u> <u>및 제34조의5</u> ----- ----- 다.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 <u>이 항</u> <u>및 제34조의5</u> ----- ----- ----- -----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34조의5(특정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생략)

<신설>

제34조의5(특정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서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서 이로 인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특정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면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가 특수관계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주등인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을 말한다.

1. 특수관계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 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것

2. 특수관계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자본거래로서 일부 주주등이

신주(전환사채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배정·인수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

3. 현물출자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

4.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거나 낮은 것

5. 특수관계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

	<u>당등을 받는 것</u> 6. <u>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한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 등은 제외한다)</u> 7. <u>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통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된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은 제외한다)</u> 8.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자본거래</u>	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생략) <u><신설></u> 나. <u>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u> 2. (생략) ⑤ (생략) ⑥ <u>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1. <u>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u>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u>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u> 다. <u>가목 및 나목 -----</u>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u>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u>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	④ -----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신 설>

⑦

대

가

⑧·⑨ (현행과 같음)

⑩ 제4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1조의2·제42조의2와 제28조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할 때에는 제2호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⑥ (생략)

<신 설>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하며, 제4호를 준용할 때에는 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제5항, 제31조의2 제2항 및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본다.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82조제8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조합을 말한다.

1.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2.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

<신 설>

- 물」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합과 유사한 투자조합
-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투자조합이 법 제82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명세서를 증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의 증권등의 보유내역
 2.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의 증권등의 거래내역
 3.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

- 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내역
4.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변동내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8